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권 인 순 의원)

의 안 번 호	23-106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10. .

발의자: 권인순, 고병준, 권영숙, 김승수,
신종갑, 안미자, 오옥자, 이한동,
장정희, 차해영, 채우진, 최은하,
한선미

1. 제정이유

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,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고,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,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책무(안 제3조)
- 나.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내실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라. 임신·출산 지원, 진로상담, 취업지원,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, 보건·의료 서비스 지원,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9조)

- 다.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를 둠(안 제10조)
- 바.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사.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, 제18조의 3, 제18조의4, 제18조의5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23. 8. 21. ~ 8. 28.
- 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부모”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부모 가정”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)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마포구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청소년부모의 책무)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6조(지원대상 등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(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)와 그 자녀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
2.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4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 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 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·출산 지원
2. 청소년부모의 학업(대안교육 포함) 및 진로상담, 취업 지원
3.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
4.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·의료 서비스 지원
5.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
6.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)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

2.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3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위원회의 구성 등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중복지원의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유지 등)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나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청소년복지 지원법 (약칭: 청소년복지법)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31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18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2.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
3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18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, 의료 지원, 주거 지원,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제18조의5(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
3. 직업소개 및 관리
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3. 23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지원사업 등)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(지원사업 등)에 따른 사업 추진 시,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권다영
연 락 처	02-3153-8932